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55
----------	----

발의일자 : 2007. 6. 14
발의자 : 한승정 의원외 13

1. 제안사유

-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소외받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병원, 약국 이용 시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저소득 노인계층” 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자 중 사하구 거주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말한다.
(안 제2조)

나.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구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한다.(안 제3조)

다.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본예산 편성
- 다. 입법예고 : 2007. 6. 15 ~ 2007. 7. 5 (20일간)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워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노인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자 중 사하구 거주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구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한다.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해당 월 말일까지 지원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받아 구청장이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월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비용소요 추계서

연도별 국민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 노인 현황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수(명)
	인구수(명)	증가율(%)	
2007년	28,153	-	741
2008년	31,427	1.1162	827
2009년	33,962	1.0806	893
2010년	36,950	1.0879	971
2011년	39,491	1.0687	1,037

* 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수는 인구 증가율을 적용한 추계 숫자임

연도별 10,000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소요재원 추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월간(원)	3,435,440	3,834,150	4,140,140	4,501,760	4,807,760
연간(원)	20,612,640	49,230,480	53,159,390	57,802,590	61,731,630

* 2007년분은 7월부터 시행할 경우 6개월만 적용

【최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요율】

2006년 ⇒ 7.5% , 2007년 ⇒ 6.5% 인상분을 산술평균하여

2008년도부터 매년 「7%」 씩 적용한 추계 숫자임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비용소요 추계서

연도별 국민건강보험료 5,000원 미만 노인 현황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료 5,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수(명)
	인구수(명)	증가율(%)	
2007년	28,153	-	241
2008년	31,427	1.1162	269
2009년	33,962	1.0806	315
2010년	36,950	1.0879	342
2011년	39,491	1.0687	365

* 건강보험료 5,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수는 인구 증가율을 적용한 추계 숫자임

연도별 5,000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소요재원 추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월간(원)	787,240	940,200	1,100,980	1,195,360	1,275,750
연간(원)	4,723,440	11,282,400	13,211,760	14,344,320	15,309,000

* 2007년분은 7월부터 시행할 경우 6개월만 적용

【최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요율】

2006년 ⇒ 7.5% , 2007년 ⇒ 6.5% 인상분을 산술평균하여

2008년도부터 매년 「7%」 씩 적용한 추계 숫자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고 제2007-6호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소외받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병원, 약국 이용 시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저소득 노인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자 중 사하구 거주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말한다.
(안 제2조)

나.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구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한다.(안 제3조)

다.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안 제7조)

4. 조례 제정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참조 : 사무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220-4092), FAX(220-40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제출 의견

항 목 (조문 및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기타 참고사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워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노인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자 중 사하구 거주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구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한다.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해당 월 말일까지 지원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받아 구청장이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비용소요 추계서

연도별 국민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 노인 현황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수(명)
	인구수(명)	증가율(%)	
2007년	28,153	-	741
2008년	31,427	1.1162	827
2009년	33,962	1.0806	893
2010년	36,950	1.0879	971
2011년	39,491	1.0687	1,037

※ 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수는 인구 증가율을 적용한 추계 숫자임

연도별 10,000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소요재원 추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월간(원)	3,435,440	3,834,150	4,140,140	4,501,760	4,807,760
연간(원)	20,612,640	49,230,480	53,159,390	57,802,590	61,731,630

※ 2007년분은 7월부터 시행할 경우 6개월만 적용

【최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요율】

2006년 ⇒ 7.5% , 2007년 ⇒ 6.5% 인상분을 산술평균하여

2008년도부터 매년 「7%」 씩 적용한 추계 숫자임